

[별표 19] <개정 2014.11.19.>

**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** (별표 15 관련)

1.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

| 구분        |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공무원 경력 | 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(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·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,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·산업기능요원·전문연구요원, 승선근무예비역,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). 다만,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. | 10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2) 고용직(대통령령 제12705호 「고용직공무원규정」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)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유사 경력  | 1) 전문·특수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가) 법인,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나) 교육·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(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.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. |
|           | 다)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가) 대통령령 제7265호 「잡급직원규정」 및 대통령령 제7976호 「지방잡급직원규정」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「잡급직원규정」 및 「지방잡급직원규정」 시행 전의 임시직, 촉탁,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<br>· 비동일분야 경력: 80퍼센트        |
|           | 나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, 촉탁,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)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<br>· 비동일분야 경력: 50퍼센트        |
|           | 다)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3) 그 밖의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| 퍼센트 이내<br>· 비동일분야 경력 : 50퍼센트 이내. 다만, 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. |
| 나)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 이내<br>·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) 국제기구(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)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 이내<br>·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)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 이내<br>· 비동일분야 경력: 5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) 국·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(동일 분야만 해당한다)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

| 구분        |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환산율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공무원 경력 | 1)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·지도직·특정직·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|
|           | 2)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 의무복무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|
|           | 3)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·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퍼센트  |
|           | 4)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. 다만, 무관후보생 경력 및 고용직(대통령령 제12705호 「고용직공무원규정」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) 경력은 제외한다. | 60퍼센트  |
| 나. 유사 경력  | 1) 전문·특수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| 가)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. 다만,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|
|           | 나)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퍼센트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정최저연수. 다만,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) 법인·단체·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)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(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) | 100퍼센트 이내. 다만,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, 촉탁,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)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그 밖의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동일분야 경력: 100퍼센트 이내<br>· 비동일분야 경력: 50퍼센트 이내. 다만, 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. |
| 나)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(동일 분야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) 국·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(동일 분야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)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(동일 분야만 해당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퍼센트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비고

가.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
나. 제1호나목1)다)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